

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

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9월 6일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- 신청기간: 9월 6일(월) ~ 9월 30일(목)까지
- 방법: 소재지 시·군·구에 신청서 제출
- 자격: 자세한 자격요건은 본문 확인
- 선정규모: 3개소 내외
- 지원한도: 개소당 3억원(보조 1.5억원, 용자 1.5억원)

20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

□ 사업목적

-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

□ 사업대상자

- 한우,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 조합
- 한우,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(협약 체결)를 구축한 도축장, 협동조합(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·인가된 조합(지역특화)에 한함), 식육포장처리업체
 - * 지역조합은 신규 직거래판매장에 한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축산물 프라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,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직영 직거래 판매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함

□ 지원자격 및 요건

-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
 - 단,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,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확인
- 도축장, 협동조합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한우,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(협약 체결)를 구축하여야 함
 - *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(훈령) 제35조제9항 및 제78조 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
 - * 농업인·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

- 이 사업을 지원받은 축산물직거래판매장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육하는 농장 및 직거래체계 구축 농장에서 축산물(한·육우)을 공급받아 판매
 - 다만, 사육하는 농장의 일시적 수급상황 문제 등 사정으로 다른 경로로 축산물(한·육우)을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 관리기관(지자체)의 검토·승인 후 판매

※ 지원 제한 대상

-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축산관계 법령(축산법,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가축전염병 예방법,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)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사업자는 아래 표와 같이 지원을 제한

형별 및 처분 내용	지원제한 기간
징역(집행유예 포함), 벌금	3년
과태료(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), 과징금, 영업정지(조업중지, 사용중지)	2년
과태료(1회),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	1년 * 단,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 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
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	처분 결정시 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

□ 지원내용

- 지원한도 : 개소당 3억원(보조 1.5, 융자 1.5) 이내
- 지원조건 : 보조 30%, 융자 30%(금리 2~3%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), 자부담 40%
 - * 변동금리 선택가능(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, 매 6개월마다 변동)
 - * 사업신청자는 지원기준에 따라 ‘융자’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함
- 지원규모 : 3개소 내외(예산여건 및 시설별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가능)
- 지원대상 :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(음식점 및 식육판매점포 포함)
- 지원자금 사용용도
 - 식육판매점포(겸업 음식점 포함) 건축, 기존건물의 매입(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), 건물임차료(융자금에 한함)
 - 냉장, 냉동 판매(진열장), 포장, 인테리어시설,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, 소 부산물 추출(사골엑기스 등)시설,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1년 9월 6일(월) ~ 9월 30일(목)까지
- 신청방법 : 소재지 시·군·구에 신청서(붙임 서식 참고) 제출

□ 향후계획

- 심의·평가 및 사업대상자 선정 : 10월 15일(금) 예정
- ※ 사업대상자 선정 일정은 업무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선정 결과는 지자체를 통해 별도 통보 예정

- 붙임 1. 사업신청서
2. 신용조사서
3. 사업시행지침서(별첨). 끝.

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
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항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용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, 범죄경력 조회 등 사업신청 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, 주민등록번호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용자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※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
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
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, 범죄경력 조회 등 사업신청 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
3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, 주민등록번호
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계획서

1. 현 황

시 설 규 모 (㎡)		건물(㎡)	대지(㎡)					계
	소유							
	임차							
	계							
사 육 현 황 (마리)		한우	육우					계
	소유							
	위탁							
	계							
시 설 현 황	공동	판매시설	정육식당	운반시설	주차장	기 타		
	시설	㎡	㎡		㎡			
기 타 사 항	* 사업예정지 :							

2. 사업계획

◦ 세부사업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세부사업명	규모 (㎡)	사 업 비					지방비	자담
		합계	정부지원(축산발전기금)					
			계	보조	융자			
계								
건 물								
판매시설								
정육식당								
기타시설								

◦ 사업 운영계획(시설투자, 마케팅, 상품화 등)

◦ 세부사업별 추진일정

세부사업명	1/4분기	2/4	3/4	4/4
판매시설				
정육식당				
기타시설				

* “ ←→ ”로 표시

3. 사업추진 기반 조성방안

- 부지 확보 계획 (건축공사가 있는 경우)
- 인허가 및 설계 확보 계획 (사업추진 중 설계변경 가능성 여부 등)
- 법인 내 의견 합치 여부
- 사업 물량 확보 계획
 - 지역 내/지역 외 사육마릿수 및 농가 현황
- 재정의 건전성
 - '20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, 자산 및 자본규모
- 경영능력
 -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율
- 정책부합성
 - 생산농가의 유기축산물, 유기축산물, 무항생제축산물, 동물복지축산인증, HACCP 인증 생산농가 현황

※ 사업계획의 적정성, 기반조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첨부 (증빙자료 미첨부 시에는 사업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처리)

붙임 2

신용조사서

1.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

(년 월 일 기준)

주 소					전화번호				
생산자단체등· 회사,기타명칭			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			대표자 (성명)			
신청사업명									
소요사업비	총액	천원	보 조			대 출			
							자담		

2. 종합거래 신용상태

현재 연체사실			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		신용상태		
유	무	연체금액 (조사기준일현재)	유	무	양호	보통	불량

3. 대출가능액(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)

대출구분	담보종류	수량	대출가능액	담보물소재지	소유자(관계)
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			천원		

※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(담보여력)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“대출신청자료에” 의함

4. 종합의견

○

년 월 일

() 협동조합장 (인)
() 시군지부장 (인)